

## 다. 타시·도간 전출입

### 1) 관련 규정

가) 전입·전출 요구(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」 제13조)

- (1) 임용권자,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·전출·겸임 동의요구서[별지 제10호 서식]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(2) (1)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·전출·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·전입·겸임 동의서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나) 교사의 시·도간 교류(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 제17조)

제17조 (교원의 시·도간 교류)

- (1) 본 도와 타시·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(교장·교감은 직급별, 교사는 교과별)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·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, 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통합교류 교과는 사회(일반사회, 지리, 통합사회), 과학(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통합과학), 기술·가정(기술, 가정, 기술·가정)이다.
- (2)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 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.

#### (가) 전출 순위

순위	전출 대상	전출 요건	구비서류
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~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출 희망 사도에 거주하는 정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 1~3급 국가유공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(존속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, 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인 부양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증명</li> <li>- 상이 1~3급 국가유공자 증명서</li> <li>-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- 기타 증빙자료</li> </ul> </li> </ul>
2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해당 자로서 부부별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해당 자로서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·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독립유공자(유족)증명서</li> <li>-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경력증명서</li> <li>-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유공자(유족)증명서</li> <li>-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경력증명서</li> <li>-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 </li> </ul>
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부부별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배우자가 전출희망 사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부부별거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혼인관계증명서</li> <li>- 배우자재직(경력)증명서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초본</li> <li>- 학교장 의견서</li> </ul> </li> </ul>
4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직계존속 별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실질적 부양 책임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출 희망 시·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직계존속별거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- 학교장 의견서</li> <li>- 기타 증빙자료(본인 확인서 등)</li> </ul> </li> </ul>
5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반희망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, 2순위를 제외한 일반으로 희망하는 경우</li> </ul>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위 전출 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.</li> </ul>		